

보고서의 인용보도에서 「주장에 의하면」의 누락이 현실적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본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

TIME, INC. v. PAPE
미연방항소심법원에 대한 사건이송명령

<사실개요>

미국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야만적 행위와 그에 관련된 사적 폭력문제를 다룬 1961 년도의
보고서에서 먼로우 대 페이프(Monro v. Pape,365U.S.167)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형사반장
페이프가 이끄는 시카고 경찰 중 몇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먼로우의 인권소송에서의 주장
중 일부를 열거하였다.

타임 지는 보고서에 관한 기사에서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인용하였는데. 주장에 나타난
페이프에 대한 비난이 먼로우에 의한 것이지,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페이프는 상소인인 발행인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타임 사의 약식재판신청을 허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타임 사가
단순히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도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잘못이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New York Time Co.v. Sulliv-an,376,U.S.-.S.254) 사건의
기준 아래에서의 현실적인 악의(어떤 정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거나 그것의
진위여부에 대한부주의에 의한 무시)를 나타내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심리가 행하여져야만
했었다고 판시하였다.

보고서의 말투가 분명히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였으나 그 본래의 의도하는
바는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증거조사의 마감단계에서 타임 사 측의
평결지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이 현실적인 악의를 나타내보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배심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두 법원은 페이프가 공직에 있는 자이고
문제된 기사가 그의 공적 활동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의 상황 아래에서 타임 지는 그 자체로 배심이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로 허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a) 잡지에서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빠뜨린 것이. 애매한 짐이 많은 기록에 대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를 채택하는 셈이 되고, 그러한 하나의 선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보다는 해석이나 판단의 잘못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였던 것과 같이 뉴욕 타임즈 사건의 기준 아래에서 「악의」에 관한 배심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것이 못 된다.

(b) 이 사건에서의 판시는 이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것도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간행물에서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이 없어도 좋은 것인 양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419 F.2d 980 파기환송)

스튜어트 판사가 법원의 견해를 피력하였고, 여기에는 버거 대법원장, 그리고 브레난, 화이트, 마아샬, 블랙먼 판사 등이 가담하였다. 블랙 판사가 판결에 동조하는 내용의 견해를 내놓았고 여기에는 더글라스 판사가 가담하였다. 하알란 판사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돈 H. 류벤(Don H. Reuben)이 상소인을 위하여 이유를 밝히고 그와 함께 Harold R. Medina, Jr., 그리고 Lowrence Gunnels 가 서면을 제출.

Patrick W. Dunne 이 피상소인을 위한 주장을 펴고 그와 함께 Robert J. Nolan 그리고 Edward J. Hladis 가 서면을 제출.

스튜어트 판사가 법원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1961년 11월 미합중국 인권위원회는 그 해의 다섯번째 보고서로서 「자스티스」라는 제명의 기록을 발간하였다. 「자스티스」의 일부분은 경찰의 야만적 행동과 그에 관련된 사적 폭력의 연구에 할애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싣고 있었다.

「수색 체포, 그리고 폭력 :시카고, 1958.-미연방대법원은 먼로우 대 페이프 사건에 대해 1961 년 2 월 20 일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비록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원고로 하여금 수명의 시카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여 미연방 인권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청구에 기한 제소를 허용하였다 ;

「...1958 년 10 월 29 일 오전 5 시 45 분, 13 명의 시카고 경찰관들이 형사반장 페이프의 인솔 아래 먼로우의 아파트 두 문을 박차고 들어가 후라쉬로 먼로우 부부를 비추며 깨운 다음 총을 들이대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거실 가운데에 발가벗고 서있게 하였다. 경찰관들은 먼로우의 자식들 여섯 명도 깨워 거실로 몰아넣었다. 페이프 형사는 먼로우를 깡둥이 낚이라고 부르면서 후라쉬로 그를 수 차례 때렸다. 다른 한 경찰관은 먼로우 부인을 밀어붙였다. 다른 경찰관들은 아이들 몇몇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들을 마루로 밀어냈다. 경찰은 모든 방을 뒤져 장롱에서 옷을 꺼내 마루에 내팽개치고 서랍을 뒤집어 엇고 침대시트를 찢었다. 그리고 나서 먼로우는 경찰에 끌려가 10 시간동안이나 아무런 힘의 없이 억류되었는데 그 시간동안에 먼로우는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조사를 받고 또 일렬로 늘어 세워지기도 하였다. 먼로우는 치안판사가 있는 법원이 가까운 여러 곳에 있었음에도 치안판사 앞에 인도되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조언을 받지 못하였다. 먼로우는 자기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 그 후에 먼로우는 기소될만한 아무런 형사상의 혐의가 없어 방면되었다」(자스티스 pp.20~21)

일주일 뒤 주간잡지 타임 지는 그 위원회의 새로운 간행물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타임 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

『새로 나온 종이표지의 책은 307 페이지로 그 제목은 단순히 「자스티스」 이다. 이 책은 미합중국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보고서 5 권 가운데 맨 끝의 것인데, 첫번째 보고서는 1957 년 국회에 의해 만들어진 바 있다. 「자스티스」는 남부와 북부에서 경찰의 야만적 행동에 관한 냉랭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고발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타난 사실들은 현장 관계자들에 의해 세밀히 검토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6 인의 저명한 교육자들이 서명을 하였기 때문이다.』

뒤이어 「자스티스」에 나타난 사건들 중 하나는 많은 부분이 직접인용의 형식으로 기술되어있고 그런 연후에 다음과 같은 먼로우 사건의 기사가 나와 있다.

『북쪽으로 옮겨 가볼 것 같으면 그 보고서는 시카고 경찰이 흑인 먼로우와 그의 가족을 다룬 사실을 예로 들고 있는데 먼로우와 그의 가족은 새벽 5시 30분 표면상으로는 살인사건의 조사를 내세운 13명의 경찰관들이 그들의 웨스트사이드 아파트에 들이닥쳐 잠을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야만 했다. 「자스티스」에 씌어 있기로는 경찰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후라쉬로 먼로우 부부를 깨우고…」』

타임 지의 기사는 결국 먼로우의 주장을 직접 인용해 나아간 것이고 그와 같이 한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비난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사실조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먼로우 개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페이프는 시민권이 다른 까닭에 일리노이주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타임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타임 사는 문제의 기사가 정부보고서에 대한 정당한 논평이었고 따라서 일리노이 주 법 아래에서 면책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여 주도로 신청하였다. 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제 7지역을 관할하는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였다(318 F2d.252). 환송 후 이 법원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사건을 판결하였고, 그 판결에 기초를 두고 지방법원은 타임 사측의 약식재판신청을 받아들였다. 항소 후, 항소심법원은 타임 사측이 주장사실을 보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않은 잘못이 현실적인 악의를 나타내 주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심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54 F 2d 558)

심리에서 페이프는 먼로우의 집 기슭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불러냈다. 그들은 모두 위원회의 사실조사로서 타임 지 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1963년 1월 24일 배심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뒤 먼로우에 의해 페이프를 상대로 제기된 인권소송에서 판결은 페이프의 패소로 내려졌다. 배심은 먼로우에게 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페이프가 항소를 아니하였으며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었다.) 동시에 기사를 쓴 타임 사 측 스탭진 뿐만 아니라 사실의 진실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사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증언이 행하여졌다. 기사집필자는 문제의 기사를 「자스티스」 보고서 그 자체와 보고서에 뒤따른 위원회의

보도자료 그리고 「자스티스」를 소개한 뉴욕 타임즈의 뉴스에 기초를 두고 쓴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과 「소송에서의 주장사실」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타임 지의 기사내용이 「자스티스」 보고서의 전체내용을 놓고 볼 때에 거짓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여자조사원은 자기가 먼로우의 주장을 기술한 몇 개의 뉴스기사와 페이프의 과거 경력을 다룬 몇 개의 기사를 참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여자는 또 자기가 타임 사의 시카고 특파원으로부터 송고 된 두 개의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실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먼로우의 주장을 함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타임 지의 기사에서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은 알았지만 문제의 기사가 쓰여진 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믿었다고 말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서 지방법원은 타임 사 측의 지시평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294 F. Supp.1087). 그리고 페이프는 세 번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다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타임 사측이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빠뜨린 것이 현실적인 악의를 나타내는 것이냐의 여부결정은 배심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판시하였다(419 F.24980. 우리는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 아래에서 제기된 헌법상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이동명령을 발하였다. 397U. S.1062).

지방 법원 그리고 항소심법원은 원고인 페이프가 시카고경찰국의 형사반장으로 있었던 그 직책때문에 공직자이었다는 점, 그리고 먼로우의 주장에 담긴 비난이나

「자스티스」 보고서,타임 지 기사가 모두 그의 공적인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하였다. 다만 두 법원은 공직에 있는 자가, 문제된 발언이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즉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혹은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 현저히 주의를 기울리 하여 이를 등한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기의 공적 활동에 관련하여 명예훼손이 될만한 허위가 있다 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376 U.S.254) 사건의 룰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문제는 항소심법원이 피상소인을 위한 지시평결을 파기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놓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상의 룰을 정확히 적용하였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사는, 연방헌법 아래에서의 권리를 부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이 법원은 하급심법원의 결론에 구애 받지 않고 그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증거상의 기초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확립된 원칙 아래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Niemotko v. Maryland, 340 U.S.268,271. Napne v. Illinois, 360U S.264, 271-272 참조).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 다른 한편으로는 주 명예회손법과의 사이에 긴장상태를 남고 있는 사건에서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나타난 증거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게 뒷받침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록상의 증거에 대해 이를 재검토할 기회를 우리는 종종 가졌었다(New York Times, at 284-285 : Berkley Newspapers v.Hanks,389

U.S.81,83, St. Amant v. Thompson,390 U.S.727: 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n. v. Bresler,398 U. S.6,11).

타임 지의 뉴스기사는 위원회의 비난으로서 글자 그대로 인권소송의 원고에 의해 제기된 주장을 위원회가 기술한 것을 보도하였다. 이 상황은 전통적인 명예훼손소송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소송이 제기된 공표문제는 먼로우 사건에 대한 타임 사측의 독자적인 보도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이야기한 것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것은 단순히 이를 공표하였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로우의 비난을 권위 있는 공적인 출처로 돌려버리는 데서 기인하는 잘못 또는 단순한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기사의 집필자와 조사원은 공표시점에서 위원회보고서의 말투가 분명히 바뀌 것은 인정하였지만 그 참뜻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 또는 그에 상당한 말을 빠뜨린 것은 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말을 빠뜨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허위를 통해 해를 가할 의도의 뜻으로서 악의가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법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의도는 일부러 말을 빠뜨린 바로 그 행위에서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악의의 문제는 배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분석은 주장된 명예훼손이 실제로 목격한 것이라거나 또는 자기나름대로 사건들의 견해를 말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든 St.Amant 사건에서 St. Amant 나 부정과 공적인 비위에 대한 비난의 진실문제와 그가 그러한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은 점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느냐 여부의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매일매일 또는 정기적인 언론에 의해 발표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아마도 정부활동에 관계되는 뉴스의 상당한 부분은 보고서, 연설, 기자회견 등의 자료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간접적인 신문보도에서의 진실문제는 자못 복잡한 문제들을 보여준다.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뉴스보도에는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미세한 변화들이 담겨질 수 있다. 뉴스의 출처가 사실에 근거한 있는 그대로의 주장일 때-경찰관이 어떤 사람을 범죄혐의로 체포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에는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출처 그 자체가 흘러나온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다. 출처 그대로를 말 그대로 인용하지 않게 될 때에 공표자는 불가피하게 선택의 문제에 맞부닥뜨리게 된다.

인권위원회의 「자스티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전형적인 예이다. 보고서가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게끔 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담은 사진이었다. 포함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매우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독자들을 분노하게 만들며 그들을 놀라게 하도록 꾸며졌고 실제로는 위원회의 특별한 입법권유에 독자들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도록 꾸며졌다. 그러나 자세하게 이야기된 사건들의 사실이 충실하려는 위원회의 태도는 그저 솔직한 것이었다.

첫째로 사건들은 첫 페이지부터 의심의 여지없는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주장된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다.

「1931 년 후버 대통령의 위커샘(Wickersham) 위원회는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을 포함한 경찰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들을 찾아냈다. 6 년 뒤 또 다른 대통령자문위원회-이것은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다-는 경찰의 야만적 행위,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약한 자 그리고 방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행동은 큰 걱정거리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1961 년에 이르러 이 위원회는 경찰의 야만적 행동은 온 미국을 통틀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스티스」).

두 페이지 뒤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위원회는 특히 대부분의 경찰 관리들이 야만적 행동에 결코 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때문에 법 시행과정에서 몇몇 야만적 행동이나 차별대우는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부조화의 문제에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일반의 관심을 집중 시킴으로써 이 보고서가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큰 활자체로 『불법적인 경찰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계속되는 보고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중대한 서술이 나와있다

「이 장의 본문에서 위원회는 경찰의 야만적 행동 중 전형적인 11 개의 사건에서 주장된 사실들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그것들은 이들이 문제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에서 제시된 것이다. 비행에 대한 주장들은 수개의 사건에서 형사상의 기소라든가 중립기관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선서한증인의 증언이나 목격증인에 의한 선서진술서 또는 사계 연구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위원회는 어느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나 또는 관리들의 말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주장들이 이 연구에서의 논의를 정당화 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애매한 것으로 특징 지워질 수가 있다 한편으로 다음에 제시된 각 사건은 「문제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또 이 연구에서의 「논의를 정당화 시키기에 족할 정도로 실제적인 것」이었던 「경찰의 야만적 행위 중 11 가지의 전형적인 사건들」이었다. 출처들의 한계도 기술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넣어주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틀림없는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은, 「주장에 의한 사실들」, 「비행에 대한 주장들」이라는 말을 하여 주지 않았다. 그와 같은 궁극적인 결정이 단지 법원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으리라는 시사는 혼란을 막아주는 것이다. 본문에서 위원회가, 기술될 사건들과 관련하여 신뢰감이나 회의를 심어주려고 애썼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페이지를 넘기면 독자는 대문자로 된 또 다른 제목 『경찰의 야만적 행위의 유형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술이 시작되었다. 각 사건은 이탤릭체로 된 표제를 담고 있었고(예를 들면 『The Killing of a Negro in Georgia : 1943』) 이어서 이야기의 양면을 보여주고 또 모든 사실을 「주장에 의한 것」으로 또는 직접 인용을 하면서 기술한 자료들이 뒤따라 나와 있었다. 그러나 야만적 행위의 주장을 둘러싼 진실이나 허위에 관한 엄정중립의 색채는 위원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견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난 말들에 의해 심심치 않게 손상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지아에서의 흑인

살해』라는 제목의 글 끝 부분에서 보고서는 「관련된 공무원들 중 누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나 형사소추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지방행정당국의 경찰에 대한 태도는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날 것으로서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된 이 사건과 또 다른 수개의 사건에서 이를 감싸주려는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먼로우 사건의 기술에도 이탤릭체의 제목이 붙어 있다 : 『수색, 체포, 그리고 폭력 : 시카고.1958.』 그러나 다른 사건들의 보고내용과는 달리 이 부분의 보고는 본 판결이유의 시초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소송에서 나타난 원고의 주장 중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야기에 어떤 다른 견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행하여진 바가 없고 인용부분의 끝에 이르러 바로 다음 보고(『크리블랜드에서의 한 흑인살해 : 1959』)가 나와 있다.

『결론』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위원회는 자신의 사실인정과 건의사항을 내놓고 있다. 이 부분은 「몇몇 연방과 지방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야만적 행위는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백인이나 흑인 할 것 없이 모두 그 피해자이지만 흑인이 미국사회 어떤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그러한 야만적 행동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건의내용 중에는 연방과 주경찰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제도의 제안과 불법적인 경찰의 폭력을 사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연방법규의 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앞머리에서 기술된 일련의 사건들이 위원회가 자신의 사실인정과 건의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위원회가 기술된 사건들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틀림없이 믿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자스티스」에 기술된 것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위원회가 먼로우 사건을 보고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소장에 나타난 주장에 이를 한정시켰다는 말을 타임 지가 하지 않았을 때 타임 사가, 배심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약의」의 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 타임기사의 집필자는 본질적으로 먼로우 사건의 보고서의 본문이, 위원회가 그 사건이 쓰여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믿고있음을 자기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그는 그 자신이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빠뜨렸을 때 보고서를 그릇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페이프의 과거경력에 대한 자료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와 시카고로부터의 타임 지기자가 보낸 두개의 보고를 읽은 타임 지 조사원은 위원회가 앞서의 비난들을 진실한 것으로 여겼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훨씬 더 많은 근거를 갖고 있었다.

타임 사측이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빠뜨린 것은 애매한 점이 많은 기록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합리적 해석 중의 하나를 채택한 셈이 되었다. 의도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택하는 것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거늘 오해를 야기케 하는 것이지만 뉴욕 타임즈 사건

아래에서의 「악의」에 대한 배심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것과 같은 말을 빠뜨렸다 하여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그와 같은 말이 담긴 본문과 보고서 전체의 뜻에 대한 외부증거에도 불구하고 악의의 문제를 배심의 손에 맡기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보다 해석이나 판단의 오류에 훨씬 더 엄한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뉴욕 타임즈 사건은 Madison 이 표현한 바와 같이 「약간의 남용은 모든 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언론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옳게 들어 맞는 것이다」 (4J.Elliot의 연방헌법에 대한 논의들 571<1876>)라고 하는 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사건보도를 함에 있어 사실의 오류와 관련하여 우리는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을 몰아내는 룰-그리고 사실상 액수에 제한이 없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의 고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검열의 길로 이끌게 된다. 진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여 진실에 의한 방어를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릇된 언론만이 방해 받으리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방어를 적절한 안전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법원조차도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것에 대해 모든 사실상의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진실하다는 법률상의 증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러한 룰 아래에서는 공적인 활동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비판은 비록 그와 같은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또 사실상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 걱정때문에 실제로 비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76 U.S., at 279.)

그러한 고려 사항들, 주장된 명예훼손이 장문의 정부기록을 잘못 요약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적용될 것이다. 보도된 기록이 이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단히 애매할 때에는 발행인이 배심의 자유재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진실증명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명예훼손법의 어떤 분야에서는 뉴욕 타임즈 사건의 판결은, 개별주의 불법행위법에 과실에 의해 야기된 사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영역을 더해 놓았다. 그럼으로써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진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등한히 하는 것과 같은 사항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의의무를 견지하는 발행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실수때문에 그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가 해석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분석 결과였다. 왜냐하면 일단 배심에서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평결한 이상 잘못 그 자체가 평결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든 아만트 사건 (St. Amant 대 Thompson 731)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가 판결한 사건들을 통해 ...부주의한 공표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한 뜻 있는 지침을 마련해 왔다. 앞서 든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 입증책임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기록상으로 발행자 자신이 자기가 허위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1964>)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상당히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79 U.S., at 74). ...이들 사건들을 보면 분별없는 행동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를 공표하였을 것인가 또는 공표하기 전에 조사를 하였을 것인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거기에는 피고가 사실상 자기가 공표하는 것의 진실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의문을 가진 채 행하여진 공표가 진실여부에 대한 부주의 혹은 현실악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타임이 내린 해석에다 적용할 때 타임 사가 진위여부에 대해 부주의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보고서의 애매모호한 점과 타임 사 측 집필자와 조사원들의 증언을 놓고 볼 때 타임 사측의 보도행위는 기껏해야 판단상의 잘못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일찍이 「표현의 자유가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숨쉴 여유를 갖게 하려면 이러한 종류의 잘못은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으로 주의할 점을 한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이 판결이유 중 어느 것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공식보도에서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내린 판결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즉,

1961년에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한 특정 정부의 공식 기록물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거짓말이나 허위에 의한 정보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어느 누구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방치되어 확산될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직인 업무에 대한 진실된 공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 1 조가 진실한 보도뿐 아니라 약간의 잘못된 공표에 대해서도 이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든 St. Amant v Thompson. at 732.)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환송한다.

(하알란 판사의 반대의견)

나는 특히 항소심법원의 더피(Duffy) 판사가 쓸 판결이유에 따라 항소심판결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처리를 보고 감히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내놓게 되었다. 나는 공직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의 책임을 제한한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선언된 룰에 대해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는 그 사건에서 자유로운 논쟁에서 잘못 말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오인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만으로 공적활동에 대한 비판이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가 우리로 하여금 공직에 있는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누구에게나-그것이 뉴스 매체이든 또는 그 밖의 누구이든-전적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게 하거나 또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통상의 법 절차가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언론을 상대로 한 어떠한 명예훼손소송에도 포함되어 있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실질적 이익은, 어떠한 보도가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즉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혹은 사실여부에 대해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리한 채 행하여졌을 때에만 보통법상으로 명예훼손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헌법상의 룰에 의해 적절하게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오늘 당 법원이 취한 조치 즉, 타임 지가 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보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확한 것이었다는 문제를 배심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문제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만으로 하여 당 법원이 내린 판결은 내 의견으로는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

배심이 내린 평결이 증거가 충분한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를 이미 정확한 법적기준을 적용하는 항소법원이 심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어친 신문사나 개인이 당 법원으로 하여금 배심의 평결기록을 재심토록 요청한 사건과 구분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본인은 찾아볼 수 없다.내가 이 사건을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그와 같이 구별할 만한 아무런 특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 법원이, 수정헌법 제 14 조의 자유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벌을 가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판결 등이 근거로 하고 있는 증거를 자유롭게 재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재량권은 당 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법상의 이슈를 담고 있는 모든 사건에서 기본이 되는 논쟁점을 새로이 해결하여야 한다면 당 법원이 그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본인은,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어떠한 특별한 이익, 즉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적용된 현실적 악의적 기준으로는 충족되지 않는으나 당 법원을 통상적인 명예훼손사건에서 생겨나는 사실여부의 논쟁을 조정할 궁극적인 중재자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만한, 특별한 이익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의 권한을 제한할 만한 고려사항을 수정헌법 제 14 조를 고려할 때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이 법원이 이 법원의 견해를 그렇게 광범위한 범위에까지 미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오늘 취해진 조치가 다시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명될 문을 열어놓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나는 하급법원에서 뉴욕 타임즈 사건에 의해 페이프에게 요구되는 증거의 질을 적절히 규정하였고 또 지시평결을 허용한 심리법관의 판단을 통과시정에 있어 재검토의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판결을 인용하고자 한다.